

# In brief

##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IASB 의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April 2016

### Issue

#### At a glance

IASB 는 수행의무의  
식별,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및 본인과  
대리인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FRS 을 개정하였고  
경과규정에 추가적인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개정내용은 FASB 의 US  
GAAP 개정내용과 차이가  
있다.

IASB 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수행의무의 식별,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 대한 회계처리 및 본인·대리인 평가(총액·순액 표시)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지침에 대한 새로운 사례와 개정된 사례도 추가하였다. IASB 는 개정 기준서로의 경과규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실무적 간편법도 포함시켰다.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 가능하다.

### Impact

#### 수행의무의 식별

개정내용은 계약상 약속들이 언제 ‘구분된’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어 별도로 회계처리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 기준서는 특히 어떻게 재화와 용역이 계약에 포함된 다른 약속들로부터 ‘별도로 식별가능’한지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기업의 약속이 고객에게 개별적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재화와 용역을 투입물로 하는 결합된 항목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라이선스에 대한 지침의 개정내용은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로부터의 수익을 일정기간에 걸쳐 인식할지 일정 시점에 인식할지를 명확히 하였다. 기업이 지적재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수익은 일정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개정내용은 (a) 기업의 활동의 결과 지적재산의 형식과 기능성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b) 고객이 지적재산으로부터 효익을 획득할 가능성이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의존하고 있다면, 그 활동들은 지적재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한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6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개정 기준서는 또한 매출액 또는 사용량기준 로열티 지급조건의 지적재산 라이선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 지침은 계약 내에 라이선스가 대부분을 차지할 때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본인 vs 대리인 적용지침**

IASB는 약정 상 본인은 고객에게 이전하기 이전에 재화와 용역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내용은 '통제' 원칙의 적용과 본인·대리인 의사결정의 지표들 사이의 관계 및 평가를 위한 '회계단위'와 함께 용역거래에 대한 통제 원칙의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또한 대리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던 지표들을 본인 입장의 지표들로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다음 두 가지 지표를 삭제하였다.

- 기업의 대가는 수수료 형태이다.
- 기업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 **경과규정의 실무적 간편법**

개정내용은 새로운 기준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새로운 실무적 간편법을 추가하였다. 첫째, 비교표시된 가장 빠른 기간의 기초 시점이나 기준서의 최초적용일 이전의 계약변경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모든 비교기간을 소급재작성하는 경과규정을 선택한 기업도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기간의 기초 시점에 이미 종료된 계약에 대해서는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 *Insight*

개정내용은 IFRS 15의 핵심원칙을 수정하지 않았다. 다만 기준서의 좀 더 복잡한 측면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내용은 다양한 기업에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자는 IFRS 15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IFRS 15의 개정은 FASB의 US GAAP 수익 기준서에 대한 개정내용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두 위원회는 수행의무의 식별과 본인·대리인 지침에 대해서 동일한 수정내용을 제안했으나 FASB의 라이선스 지침은 IFRS 15의 개정 지침과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US GAAP은 동일한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ASB는 회수가능성, 판매세의 표시, 비현금대가의 측정과 운송 등 활동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IFRS 15은 이러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IASB는 결론도출근거에 기준서 문구의 차이로 IFRS와 US GAAP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